

경운대학교 비정년계열교원성과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원의 성과(이하 “성과”라 한다)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대상) 이 규정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 중 비정년 교원과 산학협력 교원, 외국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분 및 정의) 교원의 성과는 교육, 산학, 연구, 봉사,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및 기여도 등 7개 성과 영역으로 구분한다.

1. 교육성과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의 성과를 말한다.
2. 연구성과란 교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저술, 창의적 연구, 연구실적 등의 성과를 말한다.
3. 산학성과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 교류한 실적 및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기여 등의 성과를 말한다.
4. 봉사성과란 대학의 발전에 봉사한 교내의 보직, 위원회 등 활동 성과와 교외의 위원, 전문가 등 활동 성과를 말한다.
5. 재무적성과란 대학의 재정 운영에 기여한 교원의 전공분야나 소속학과의 재무적 성과를 말한다.
6. 비재무적성과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교원의 전공분야나 소속학과의 발전(특성화) 계획 및 운영 성과를 말한다.
7. 기여도성과란 대학, 단과대학 및 소속학과 등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한 성과를 말한다.

제2장 평가 절차

제4조(평가 대상기간) 성과평가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1회 실시한다. 다만, 1년이 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의 성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시로 제출하되, 매년 성과평가 대상기간 종료 10일전 까지 각 행정부서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부서장은 증빙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개인별 평정 점수를 기입하고 기획조정처장에게 제출하며, 기획조정처장은 평정 점수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미제출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01.>

③ 기획조정처장은 개인별 평정 점수의 순위를 산출하고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1.10.01.>

④ 교원성과평가위원회는 개인별 평정 결과를 심의하고, 기획조정처장은 심의결과 회의록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제6조(교원성과평가위원회) 교원 성과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둔다.

제7조(이의 신청 및 처리)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01.>

② 위원회는 평가 및 소명자료를 재검토하여 심의하고, 기획조정처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21.10.01.>

제3장 평가기준

제8조(교육성과) 교육성과는 수범, 강의, 학생지도 항목으로 구분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연구성과) 산학성과는 저술, 학술 및 연구활동 성과로 구분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산학성과) 산학성과는 산학교육, 산학연구 및 산학봉사 활동 성과로 구분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봉사성과) 봉사성과는 교내 봉사활동과 교외 봉사활동 성과로 구분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는 교육투입, 교육관리 및 교육성과로 구분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비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는 계획평가, 실적평가로 구분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기여도성과) 기여도 성과는 대학, 단과대학, 소속학과 및 동료 교수평가로 구분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성과업적물 심사) ① 이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② 성과연봉제 대상 교원은 매년 성과업적물에 따른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성과의 예외 평가) ① 총장은 제3조의 성과평가 7개 영역 이외에 별도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각종 징계실적 등을 토대로 최대 100점을 감점하여 최종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전공 또는 학과가 평가시점에 편제 미완성 상태이거나 정원이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성과업적물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열 평균값이나 단과대학 평균값 또는 대학 평균값을 적용하여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제정 기여율은 예외로 한다.

③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교원의 소속학과 단위의 성과업적물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학과 평균값을 소속 교원에게 일괄 적용한다.

④ 이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제17조(누락 인정 성과업적물의 불인정) 교원의 성과는 각 행정부서에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매년 정기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관계로, 연기 또는 미제출로 인한 누락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교원의 성과평가 결과는 교원의 성과연봉제 급여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19조(성과평가 등급) ① 교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S,A,B,C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교원에게는 기준연봉만 지급한다.
2. 연속으로 2회 이상 B등급을 받은 교원에게는 C등급을 적용하고, 해당 성과연봉의 지급 금액을 적용한다.
3. 전년도에 C등급을 받은 교원이 당해년도 평가결과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에는 B등급을 적용하고 기준연봉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년도의 성과평가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성과등급은 B등급으로 한다.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비율				
지급금액			기준연봉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성과연봉은 교원별 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교원별 등급비율과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평가사무의 관리) 성과평가의 총괄 사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제21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영역 - 교육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대상	구분	비정년	산학협력	외국인
1. 수범활동	교원의 근무 성실도 실적	개인	정량	20	5	50
	교원의 품위유지 실적	개인	정량	50	5	30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실적	개인	정량	30	5	50
2. 강의활동	책임 강의 학점 준수	개인	정량	10	2	50
	수업개선 노력도	개인	정량	20	3	50
	수업용 교재 개발 및 활용	개인	정량	10	3	50
	출석부 및 성적 제출, 결강 실적	개인	정량	10	2	20
	강의만족도 실적	개인	정량	100	15	100
3. 학생생활 지도활동	행사지도 활동실적(비교과)	개인	정량	50	10	50
소 계				300	50	450

[별표 2] 평가영역 - 연구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9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대상	구분	비정년	산학협력	외국인
4. 저술활동	논문, 저역서	개인	정량	50	30	50
5. 학술활동	학회활동, 전시활동	개인	정량	30	50	30
6. 활동성과	수상(학술, 예체육)실적	개인	정량	20	20	20
소 계				100	100	100

[별표 3] 평가영역 - 산학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0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대상	구분	비정년	산학협력	외국인
7. 산학교육	산학교육 유치 및 운영 실적	개인	정량	10	70	-
8. 산학연구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개인	정량	10	50	-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개인	정량	10	50	-
	연구비유치(수혜) 실적	개인	정량	10	100	-
9. 산학봉사	대내외 산학활동 실적	개인	정량	10	30	-
소 계				50	300	-

[별표 4] 평가영역 - 봉사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대상	구분	비정년	산학협력	외국인
10. 교내봉사	행정보직 수행 실적	개인	정량	10	10	10
	위원회 활동 실적	개인	정량	5	5	5
	진로체험 및 입시홍보 활동 실적	개인	정량	5	5	5
	특별위원(팀) 활동 실적	개인	정량	10	10	10
11. 교외봉사	전문가 활동	개인	정량	5	5	5
	언론홍보 및 자문활동	개인	정량	10	10	10
	위원회 활동	개인	정량	5	5	5
소 계				50	50	50

[별표 5] 평가영역 - 재무적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2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대상	구분	비정년	산학 협력	외국인
12. 교육투입	재학생 충원을 실적	학과	정량	10	10	-
	신입생 충원을 실적	학과	정량	5	5	-
	편입생 충원을 실적	개인	정량	5	5	-
13. 교육관리	재학생 이탈율	학과	정량	10	10	-
14. 교육성과	대학재정 기여율	학과	정량	5	5	-
	졸업생 취업률	학과	정량	10	10	-
	졸업생 취업유지율	학과	정량	5	5	-
소 계				50	50	-

[별표 6] 평가영역 - 비재무적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3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대상	구분	비정년	산학 협력	외국인
15. 계획평가	학과특성화(발전) 계획	학과	정량	20	20	-
16. 실적평가	학과특성화(발전) 운영	학과	정량	30	30	-
소 계				50	50	-

[별표 7] 평가영역 - 기여도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4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대상	구분	비정년	산학 협력	외국인
17. 공헌실적	대학 기여 실적	개인	정량	10	10	10
	단과대학 위상 및 기여 실적	개인	정성	20	20	20
	학과 위상 및 평판도 제고 실적	개인	정성	30	30	30
	학과 동료 평가	개인	정성	40	40	40
소 계				100	100	100